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

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 조 법·제도 담당

제 목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지도·점검 및 소각·매립시설 제도개선
계획 주요내용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'22.9.27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조합·협회를 방문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지도·점검 계획과 소각·매립시설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합 이사장님의 건의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보관창고 폐기물의 선입·선출 처리여부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지도·점검할 계획임을 밝힌 바, '23년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지도·점검 시 시설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5~20일 간격으로 보관창고 내부 폐기물을 하부부터 상부까지 혼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대기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

붙 임 :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업무협의 주요내용 1부,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

대 리 김 정 훈 기술지원팀장 한 인 성 상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이 민 석
회 창 감 경 권

협조자

시행 항공조 2022 - 343 (2022. 10. 28) 접수
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업무협의 주요내용

1 개요

- 일 시 : 2022. 9. 27(화), 10:00 / 10.17(월), 14:00
- 장 소 :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회의실 /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
- 참석자 현황 : 5명

기관명	참석자
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	손중훈 사무관 / 공민지 주무관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	이민석 이사장 / 김상배 부이사장 / 장기석 상무

2 업무협의 주요내용

가. 환경부 지도·점검 및 제도개선 계획 설명

1) 소각시설 보관창고 폐기물의 선입·선출 처리여부 집중 점검

- 폐기물 보관창고 화재 우려 등으로 선입·선출 처리여부 집중 점검 예정(보관창고 CCTV로 바닥이 드러나는지 확인하여 보관기간 준수여부 점검)
 - ➔ (조합의견) 업체별 매뉴얼에 따라 선입·선출 처리하고 있으나, 실제 현장 CCTV에서 보관창고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 리허설 제안
 - ➔ (조합 건의의견 제출, 10.17) 보관창고 CCTV 바닥 확인 관련 현실적 준수 어려움과 「환경오염시설법」에서는 3년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동일하게 점검 요청

- ➔ (환경부 의견) 「환경오염시설법」과 별개로 「폐기물관리법」 보관기간 30일 준수여부 확인 필요 의견(필요 시 현장 리허설도 실시) / '23.3월부터 지도·점검 예정 / 보관창고 폐기물 15~20일 간격 혼합 등 조합 원사 사전 준비 필요

2) 소각시설 바닥재 강열감량 준수여부 집중 점검

- 소각시설 바닥재 강열감량 준수여부 및 바닥재 재활용 업체와 재활용 제품 생산에 실제 쓰였는지 여부 집중 점검 예정

3) 시멘트 소성로 대기기준 강화 추진

-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시설의 대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대기과에서 6개월 이내에 조치토록 요청
-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폐기물 사용실태와 사업장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 코자 환경부에서 상주하며 지도·점검 강화 예정

나. 조합·협회 건의사항 설명

1) 매립대상 폐기물의 성·복토 재활용 남발 집중 점검 요청

- 이력관리제 도입 및 환경부에서 해당 지자체 감사할 수 있도록 현장제보 요청

2) 소각시설 130% 처리기간 부여 요청

- 성질·상태·발열량 등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 유연한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00분의 30이내 처리 기한을 30일로 반영 요청
- ※ 최종적으로는 투입량 제한 없이 대기기준만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청

3) 일반·지정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이중 행정처분 개선 요청

-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환경청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·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 하는 현행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선 요청

4) 불연물 선별 관련 '부수적' 용어 명확히 규정 요청

- '부수적'으로 발생한 불연물의 재위탁 허용 관련 '부수적'이란 용어에 선별 시설 설치 가능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